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20.4.14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성북구 장위동 68-37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20-4-2	심의결과	보완의결(소위원회 자문선행)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			
<p>■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
〈 건축 분야 〉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형순응계획을 고려하여 단지 외부도로와 대지 레벨을 이용한 자연스런 배치계획 검토 바람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, 유니버설디자인(UD) 계획 바람.</li><li>- 단지내 소방차 등 비상차량 순환동선 계획 바람.</li></ul></li><li>○ 보차혼용통로는 도로가 아닌 보행과 차량 통행을 위하여 개방되는 시설로 ‘어린이보호구역’ 지정여부를 확인하고, 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차도가 아닌 보행공간 위주로 계획 바람.</li><li>○ 공공보행통로 인근 주거동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필로티 계획 검토 바람.</li><li>○ 2019. 6.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결 중 105동 주거부분 3개층 필로티 계획으로 개방성을 확보하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바람.</li><li>○ 장위전통시장길과 공공보행통로가 연결되는 남서측 조경공간은 광장으로 계획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람.</li><li>○ 보차혼용통로변에 계획된 근린생활시설은 인접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와 충돌되지 않는 시설로 계획 바람.</li><li>○ 단지 남동측에 편중된 어린이집, 경로당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람.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</li></ul>			

**2020.4.14.**  
**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**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20.4.14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성북구 장위동 68-37번지일대		
의결번호	2020-4-2	심의결과	보완의결(소위원회 자문선행)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			
〈 건축 분야 〉(계속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구조			
○ 108동 등 Y형, L형 주동 평면도에서 코어 주위 개구부 오픈된 부분은 지진하중 등 횡력저항시 다이어프램 거동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며, 특히 출입문 개구부가 없는 피트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런 영역에 슬래브를 계획하여 주동의 횡력거동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○ 2011년 건축위원회 심의시 기준과 현재 변경·강화·추가된 아래의 기술 기준 반영여부 확인 바람.(201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참고)			
-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방수, 방근 기준			
-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			
- 불연·단열재 등 건축물의 방내화규정, 층간소음 강화기준. 끝.			

2020.4.14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